

식품영업허가기준 개정

보건사회부 고시 제87-44호

調 査 部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고시 제86-26호 “식품영업허가기준”(86.5.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7. 7. 18.

보건사회부장관

제명중 “식품영업허가기준”을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으로 한다.

제1조의 제목중 “허가기준 적용업종”을 “허가제한대상업종”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3조의 3 제4호의 적용대상업종”을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제한대상업종”으로 하고, 제10호 “대중음식점영업중 인삼찜집영업”을 “대중음식점영업중 인삼찜집영업 및 이동음식점(단, 자동차 이용에 한함)”으로 하며, 동조 제11호중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등음료제조업”을 “청량음료제조업”으로 한다.

제2조 본문단서 “다만, 보건사회부 고시 제82-25호(82.5.22)에 의거 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 고시된 업종으로서 당해 영업의 합병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만, 제1조 제6호의 영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의 경우와 보건사회부 고시 제82-25호(82.5.22)에 의거 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 고시된 업종으로서 당해 영업의 합병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자체실험검사실”을 “자체검사실”로 제2호중 “별표 9”를 “별표 7”로, 제3호 1)중 “실험실”을 “검사실”로 하며 “타일을 부착하여야

한다.”를 “타일을 부착하거나 또는 방균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호 2)중 “실험실등”을 “검사실등”으로, 동호 7)중 “실험실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9의 2,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소분업, 집유업, 유처리업을 포함한다)의 공통시설기준 마.”를 “검사실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7의 1,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선상수산 제조 가공업 제외)> 바”로, 후단 “실험기계·기구류”를 “검사기계·기구류”로, 제4호 1)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3)중 “공장” 다음에 “전담”, “하천”을 삽입하고, 동호 5)중 “스텐레스스틸”을 “스테인레스”로, 동호 7)중 실험실등을 “검사실등”으로 하며, 동호 10)의 (9)중 “자동공병검사대”를 “공병검사대”로 한다.

1) 제1조 제6호의 영업은 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수출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허가신청시 수출신용장(당해년도 미화 30만불 상당이상)이 개설되어야 하고,
- 나)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는 대리점이 수출국에 설치되었거나 해외주재 계열회사 종사자를 위한 급수공급 계획 또는 1년 이상의 수출계약이 인정될 때.
- 다) 기타 적정량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